〈감사 규약〉

거거덩협동조합 총회 승인 (2024 년 3 월 26 일)

제 1 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약은 조합의 감사가 조합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(적용범위)

감사(感事)의 감사(勘査)는 법령·정관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약을 적용한다.

제 2 장 행위

제 3조(감사의 구분)

- ① 감사는 정기감사·특별감사로 구분하며, 정기감사는 결산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.
- ② 감사를 상임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일상감사를 추가한다.

제 4조(감사범위 및 감사대상 기간)

- ① 정기감사는 지난번 감사 기준일 다음날부터 이번 감사 기준일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다.
- ② 특별감사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사대상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.
- ③ 결산감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실시한다.
- ④ 감사는 제 1 항의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 5 조(감사사항)

-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.
 - 1. 조합원 및 임원 관계
 - 2. 사무 및 회계
 - 3. 법령의 준수
 - 4. 정관과 규약·규정의 정비 및 준수
 - 5. 총회, 이사회 기타 제 회의의 의결사항
 - 6. 중요계획 기타 법률 행위
 - 7. 서류 및 장부의 관리보존
 - 8. 사업계획의 집행 및 사업운영상황
 - 9. 자금의 차입 및 사용
 - 10. 보조금, 부과금, 기타 수입
 - 11. 경비의 지출
 - 12. 현금,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의 관리
 - 13. 고정자산의 취득·처분 및 관리
 - 14. 기타 재산의 관리 상황

15. 결산

- 16. 그 밖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
- ② 제 1 항의 감사범위, 방법,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감사가 정한다.
- ③ 감사는 전문분야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 6 조(중복감사 금지)

감사는 이미 외부감독기관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안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전의 감사결과를 활용하여야 한다.

- 1.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2.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·변조된 것이 발견된 경우
- 3.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

제 3 장 직책 및 직무

제 7조(감사의 의무)

- ① 감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지닌다.
 - 1. 관계법령·정관·규약·규정을 준수하고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.
 - 2. 직무상 알게 된 기밀사항을 부당하게 공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
- ② 감사가 제 1 항의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함으로써 조합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법과 정관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
- ③ 감사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 활동 기능이 위축 또는 침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 8 조(인력 및 감사자료 등의 요구)

- ① 감사는 이사장에게 감사실시기간 중 감사에 필요한 인력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이사장에게 감사를 위해 필요한 장부, 서류, 물건의 제시, 조서작성 및 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증인의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이사장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 9 조(감사결과 시정요구)

- ① 감사는 감사 종료 후 2 주 이내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통보서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송부하고 시정·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장은 제 1 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 소정의 기한 내에 이를 시정·개선하고, 그 결과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0 조(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 및 변상판정 요구)

- ① 감사는 감사결과 사고를 발각하고 사고관련자에 대한 문책이나 손해액의 변상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에게 징계처분 또는 변상판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- ② 이사장이 제 1 항에 의하여 징계처분이나 변상판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시행 후 1 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 11 조(시정 등 확인)

- ① 감사는 제 9 조에 의한 지정 및 개선조치 사항에 대하여 다음 회차 감사에서 조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② 감사는 제 10 조에 의한 징계 및 변상판정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 12 조(이의신청)

- ① 이사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고서 접수 후 1 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제 1 항의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의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감사보고)

- ① 감사는 매년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.
-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바에 의하여 이사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③ 감사는 감사결과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담당과 또는 지역의 관할기관 협동조합 담당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14 조(총회 소집권한)

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절차에 따라 감사가 이사장 직무를 대행해 총회를 소집하고 진행하여야 한다.

부칙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약은 협동조합 내에서 한하며 총회 의결된 시점부터 시행한다.

